

PL과 과실의 상계

글 · 박선옥 대표 성신전자

일반적으로 과실상계(過失相計)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책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와 같은 것이다.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보다 크게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치료를 게을리하여 상처를 더욱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피해자도 상처를 악화시킨 것에 기여했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은 제396조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면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민법 제76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8조는 민법의 적용에 관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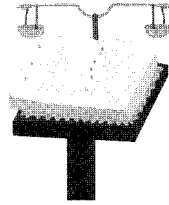
즉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요건에 관하여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의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PL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나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여기에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이러한 민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하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의 범위가 제조물 자체에만 그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제조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여기 PL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현행 민법의 각 범주를 근거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과실상계는 사고에 의한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제



도라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이를 제39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나 피해자 자신의 행위가 피해에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그 형태나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객관적 결함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제조물책임에서도 기존의 과실상계의 법리가 액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예견가능한(foreseeable) 개조와 오용이나 피해자의 위험인식 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과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에게 예견이나 회피 가능한 사용자의 오사용이나 남용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단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실이 있다 하여 쉽사리 과실상계를 인정해서도 안될 것이다. 제조물의 구조와 설계, 사용상의 경고나 표시의 사용, 오용의 정도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반 전후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피해자측의 과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와 가해자의 책임성립요소로서의 가해자의 과실을 성질상 구별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전자는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의무위반이라는 강한 과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현황

인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유효기간	시험분야
189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김명규	경기도 안산시 일동 638-1	2003.2.5~2008.2.4	전기시험
190	(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이영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상동 1	2003.1.29~2008.1.28	전기시험
191	(주)에스케이테크	스지끼구미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820-2	2003.1.29~2008.1.28	전기시험
192	샘표식품(주)	박진선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231	2003.2.29~2008.2.28	화학·생물학적 시험
193	한국생크공업협동조합	최정식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34-9	2003.2.18~2008.2.17	역학시험
194	SGS	이브헤드메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02-2	2003.2.24~2008.2.23	화학시험

공인검사기관인정현황

인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유효기간	시험분야
9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	장대홍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56-59	2003.2.3~2008.2.2	가스라이타

<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 >